

<p>○ 李秉守委員 그린데 그것도 技術職으로 막 연히 하지 말고 地方施設 技正 또는 地方工業 技正으로 아예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?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技術職으로, 行政職이 아니고 技術職으로 하면…….</p> <p>이제 됐습니다. 委員님들 質疑는 終結되었기 때문에 柳準向委員의 動議案에 再請입니다.</p> <p>(「再請이요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三清 있습니다?</p> <p>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感謝합니다.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参考)</p> <p>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(案)</p> <p>제1조(설치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업무) 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청소행정의 종합기획 2. 인력 및 장치관리 3. 쓰레기 수거, 자원 재활용의 추진 4. 청소관련시설의 종합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5. 쓰레기수거, 위생매립, 소각처리기술개발, 자원재활용 등의 연구 6. 기타 청소관련 업무 <p>제3조(본부장) ①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, 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 산하사업소를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4조(하부기관) ①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·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장을 둔다.</p>	<p>②청소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기감, 지방공업부기감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위생처리장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로 하며, 본부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.</p> <p>제5조(공무원) 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체의 개정에 의하여 청소 1, 2과가 폐지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</p>
---	---

(다음 페이지 계속)

